

-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1. 11. 20. -----최선용의원외 5인
- 나. 회 부 일 자 : 2001. 11. 20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97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01.12.1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정순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행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종전에 임기중 1회 기준으로 국외 여비를 편성하므로써 경비가 많이 드는 미국, 유럽 등의 지역으로 편중되고 여비도 과다하게 편성 집행하는 낭비성 문제 등을 개선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공무상 여행 및 국외연수를 위한 규정을 마련코자 함.

나. 주요골자

- 공무국외여행 적용 범위를 정함.(안 제2조)
- 심사위원회 설치.(안 제4조)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지식함양 및 선진기법 도입을 위하여 임기중 1회 실시하는 국외여행이 일부지역에 편중되고 예산낭비적 요소가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외 여행의 목적 및 필요성,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사전심사 하므로써 불필요한 해외여행 억제와 예산낭비의 폐단을 개선하고 공무국외여행이 필요한 경우를 명확히 하므로써 임기중 의정활동을 위한 지식함양 및 선진기법 도입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공무국외여행이 가능토록 본 규칙을 제정 하므로써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